

의안번호	2206944
의 퇴 인	이재강의원
회 답 일	2025.2.17.
추계번호	24D6480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와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5억 8,000만원, 2029년 13억 6,900만원 등 총 92억 6,500만원(연평균 23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	위원회 운영	1,382	1,410	1,438	733	4,963	1,241
	자치단체보조	1,198	1,222	1,246	636	4,302	1,075
합계		2,580	2,632	2,684	1,369	9,265	2,31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선감학원인권 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3	안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	의무규정
4	안 제14조(진상규명 조사개시)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6조(유해의 조사·발굴)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을 조사·발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위원회는 무연분묘에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17조(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9조(청문회의 실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2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14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 및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9	안 제24조(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20조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진상규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26조(손실보상)	위원회는 타인에게 유해의 조사·발굴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32조(위로금 및 보상금)	국가는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선감학원 수용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피해자의 일일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12	안 제33조(의료지원금)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간호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3	안 제34조(생활지원금)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46조(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5	안 제47조(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48조(기념사업)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 또는 추모행사 등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	—
2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포괄적 성격을 가지며, 해당 사항이 개별조문에 규정되어 있음
3	안 제10조(사무국의 설치)	○	
4	안 제14조(진상규명 조사개시)	○	
5	안 제16조(유해의 조사·발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22~2023)와 경기도(2024~2025)에서 진행
6	안 제17조(유전자 검사)	×	경기도, 유해발굴 완료 후 유전자 검사 의뢰 예정
7	안 제19조(청문회의 실시)	○	
8	안 제2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	
9	안 제24조(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	
10	안 제26조(손실보상)	×	경기도, 현재 피해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11	안 제32조(위로금 및 보상금)	×	[참고사항]에 기재
12	안 제33조(의료지원금)	×	경기도,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선감학원 피해자(생존자) 대상 연간 200만원 한도(상급종합병원), 연간 500만원 한도(경기도의료원) 지원 중
13	안 제34조(생활지원금)	×	경기도,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저소득 피해자에게 매달 20만원 지원 중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4	안 제46조(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선감학원 사건피해자지원센터(경기도) 이용 가능
15	안 제47조(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	관련 사례가 없어 사업규모 추정이 불가능
16	안 제48조(기념사업)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 포함, 이하 “위원회”라 함)의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수·순천 10·19 사건위원회”라 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2] 제정안과 「여순사건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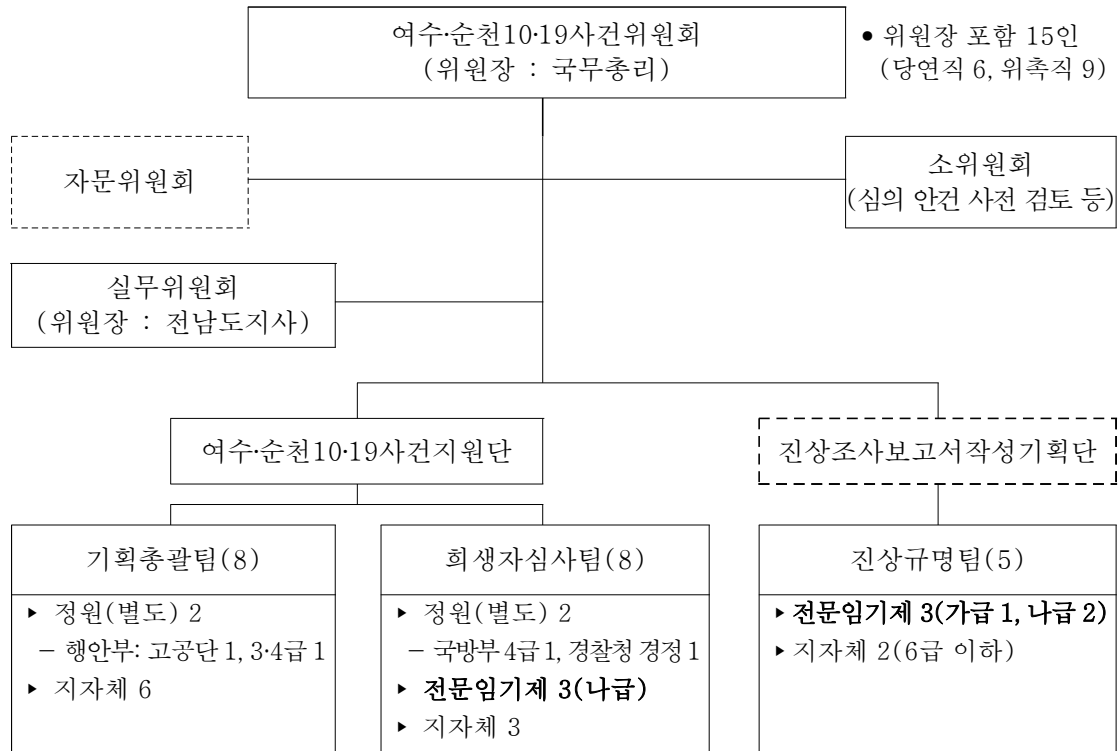
	제정안	「여순사건법」
위원회 주요 업무	진상규명, 자료 수집·분석,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피해자 유해 조사·발굴, 피해자의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 등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진상규명, 자료 수집·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암매장지 유골의 발굴·수습, 희생자의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 등 (여수·순천 10·19사건)
위원회 구성	15명 이내	15명 이내(위원장: 국무총리)
활동기간	최대 3.5년 [활동기간 2년+1년(연장), 존속기간 3개월]	최대 5년 [활동기간 3년+1년(연장), 존속기간 0.5년+0.5년(연장)]
지원조직	사무국	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지원조직 규모	-	2국 3팀 (정원 21명: 전문임기제 6명, 파견 15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최대 기간인 3년으로 하고,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3개월로 함
- 안 제20조는 위원회가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안 제24조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되, 사무국은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¹⁾와 피해자의 규모²⁾를 고려하여, 「여순사건법」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절반 수준(50%)으로 구성·운영한다고 가정함

[그림 1] 유사사례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조직도³⁾)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은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연도별 예산내역⁴⁾을 기준으로 하되,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⁵⁾을 반영하여 추정함

- 1) 선감학원(경기도 안산시 선감도(동) 위치 선감학원, 그 소유지, 암매장 추정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
 2) 선감학원 피해자 5,759명(선감학원 운영대책의 별첨자료 ‘수용아동현황’), 여수·순천 10·19사건 10,000여명(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3) 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 5명, 민간위원 11명(당연직 유족대표 1명 포함) 등 총 15명이고, 실무위원회의 지원조직은 2국 3팀이며, 정원은 신규 채용 6명, 파견 15명(국가직 4명, 지방직 11명) 등 총 21명임
 4)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연도별 예산내역: 2022~2025년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예산현액(백만원)	4,292	5,775	5,365	4,804	20,236	5,059

자료: 2022~2025년 연도별 예산설명자료(Ⅱ-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5) 소비자물가상승률(2024. 1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추계에서 유해의 조사·발굴(안 제16조), 유전자 검사(안 제17조), 손실 보상(안 제26조), 보상금 및 위로금(안 제32조), 의료지원금(안 제33조), 생활지원금(안 제34조), 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안 제46조),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안 제47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해의 조사·발굴, 유전자 검사, 손실보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2023년), 경기도(2024-2025년 8월), 완료 후 유전자검사 의뢰 예정
 - 보상금: [참고사항]에 기재
 -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경기도가 도내 거주 피해자에게 지원 중, 도 외 거주 피해자 인원 추정 곤란
 - 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 현재 운영 중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경기도 운영) 등 이용 가능
 - 피해자주거복지시설 등 설치: 관련 사례가 없어 사업규모 추정이 불가능
- 개정안 부칙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으로 함

[참고사항]

-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10년(「민법」 제766조제2항⁶⁾)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함(2018.8.30. 2014헌바148, 2014헌바223 등 병합)
- 이에 따라, 법원은 2023년부터 1심과 항소심에서 그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척하고 선감학원, 부산 형제복지원 등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국가와

6)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2022가합569301 등)

- 따라서 제정안은 불법행위(선감학원 인권침해)의 결과로 「국가배상법」, 「민법」 등 손해배상관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보상금 또는 위로금’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동 제정안의 보상규정으로 인해 국가 등의 재정소요가 신규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안 제3조·제4조·제10조, 제14조·제19조·제20조·제24조·제48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3년)과 존속기간(6개월) 동안 소요되는 위원회와 사무국의 설치·운영비는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연평균 예산액의 50%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함
- 2022년 설치된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최근 4년간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예산은 ‘위원회 운영’과 ‘실무위원회 운영(자치단체보조)’로 구분됨
 - 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운영,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표 3]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연도별 예산내역: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여수·순천 10·19사건 위원회 지원	위원회 운영 ¹⁾	2,545	2,869	2,870	2,558	10,842	2,711
	실무위원회 운영 ²⁾	1,747	2,906	2,495	2,246	9,394	2,349
합계		4,292	5,775	5,365	4,804	20,236	5,059

주: 1) 진상조사와 피해자지원 관련 인건비(전문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 위원회 운영경비(자료조사, 회의 참석수당,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홍보비, 연구용역), 진상보고서 작성·발간 등이 포함됨

2)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실무위원회 운영, 홍보비, 위령사업, 희생자 유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실조사단 구성·운영, 합동 추념행사비 등이 포함됨

자료: 2022~2025년 예산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연평균 예산액 50%를 반영하여, 추정된 위원회와 사무국의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운영에 49억 6,300

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43억 200만원 등 총 92억 6,500만원임

[표 4]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	위원회 운영	1,382	1,410	1,438	733	4,963	1,241
	자치단체보조	1,198	1,222	1,246	636	4,302	1,075
합계		2,580	2,632	2,684	1,369	9,265	2,316

주: 2029년은 위원회의 존속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50%만 반영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와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5억 8,000만원, 2029년 13억 6,900만원 등 총 92억 6,500만원(연평균 23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	위원회 운영	1,382	1,410	1,438	733	4,963	1,241
	자치단체보조	1,198	1,222	1,246	636	4,302	1,075
합계		2,580	2,632	2,684	1,369	9,265	2,31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를 참고하여 추정한 것으로, 실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사무국의 설치·운영 방식을 다르게 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